

 신안산대학교	<b>교직원 복지지원 규정</b>	규정번호 2-1-23 제정일자 2015.02.03. 개정일자 2021.08.20. 책임부서/팀·계 사무처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전임교원
2. 직원(일반직, 기능직)
3. 조교 및 임시직은 제3조의 2호, 3호, 5호, 6호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복지지원 유형)** 복지지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1.8.20. 삭제>
2. 교직원의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3. 교직원의 급식비 지원
4. 교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 지원
5. 교직원 경조금 지원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지원

**제4조(지원기준 및 시기)**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규정 제15조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한다.

- ② <2021.8.20. 삭제>
- ③ 교직원의 매2년차 건강검진 시 별도의 종합 검진비를 지원한다.
- ④ 교직원 보수규정 제20조의 6에 따라 교직원 급식비를 지원한다.
- ⑤ 교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⑥ 교직원의 경조금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지원한다.

<2019.11.14.별표1 개정, 2020.9.24.별표1 개정, 2021.8.20.별표1 개정>

- ⑦ 기타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 모든 복지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로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경조금지급표

구분		지급금액	비고
결혼	본인	500,000원	경조금 지급금액에 화환금액 포함
	자녀	300,000원	
출산·입양	배우자	300,000원	
칠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00,000원	
팔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00,000원	
사망	본인	1,000,000원	경조금 지급금액에 화환금액 포함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400,000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200,000원	
	본인의 형제자매	200,000원	
	본인의 외조부모	200,000원	